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이 확대되는 등의 내용으로 「도로교통법」이 개정(법률 제18491호, 2021. 10. 19. 공포, 2022. 4. 20. 시행)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장소 개념을 추가하고,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, 시장등이 보호구역 지정·관리 현황 작성 및 해제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료를 유관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

2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· 교육부 · 국토교통부 · 보건복지부 협의를
마침

라. 기 타 : 1) 신 · 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, 1월 중 실시 예정

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

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시설을”을 “시설 또는 장소를”로 하며, 같은 조 같은 호 중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바.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

제2조제2호 가목 중 “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·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노인여가복지시설”을 “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”로 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”을 “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”로 한다.

제3조제6항 중 “지정대상시설의 주(主) 출입문을 중심으로”를 “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의 주(主) 출입문(출입문이 없는 장소의 경우에는 해당 장소로 한다.)을 기준으로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제1호 중 “지정대상시설의 수”를 “지정대상시설과 장소의 수”로 한다.

제11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 지정·관리 현황을 작성하거나 제6항에 따라 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 제4항 각 호의 사항 또는 보호구역 지정시설 휴·폐원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4호서식, 제5호서식, 제6호서식, 제7호서식,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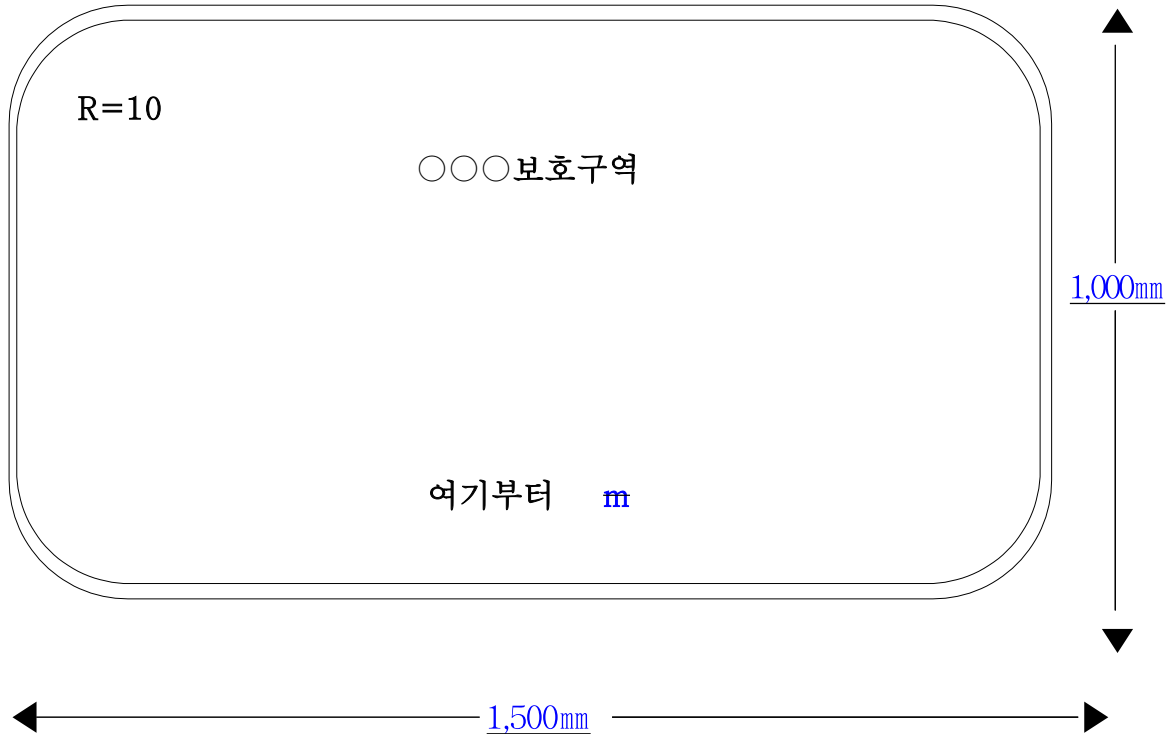
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보호구역 도로표지(제7조제2항제1호관련)

1. 형태

R=20



2. 만드는 방식

가. 지정한 보호구역의 종류에 따라 ‘어린이 보호구역’·‘노인 보호구역’ 또는 ‘장애인 보호구역’으로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고, 설치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안전표지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.

나. 표지 및 글자 크기

1) 표지는 가로 1,500mm, 세로 1,000mm로 한다. 단, 편도 3차로 이상의 보호구역에는 시인성을 고려하여 2배로 확대하여 설치할 수 있다.

2) 한글은 가로 156mm, 세로 200mm, 간격 44mm로 한다.

다. 기둥: 가운데기둥식 또는 옆기둥식

라. 색 채

바탕: 황색

글씨·테: 흑색

3. 설치 장소

보호구역 도로표지는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구간의 오른쪽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에 설치한다.

어린이 보호구역 지정·관리계획(년도)

[○○특별(광역)시·특별자치도/○○시(군)]

지정 계획	총 ____개소	유치원 ____개소, 초등학교 ____개소, 특수학교 ____개소,
		어린이집 ____개소, 학원 ____개소, <u>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등 ____개소,</u>
		<u>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____개소</u>
시설물 종류별 수량 및 예산	총 수량	총 _____ 천 원
	및	◦ 교통안전시설: 종 소요예산 천 원 ◦ 도로 부속물: 종 소요예산 천 원
	예 산	총 _____ 천 원
	교 통 안 전 시 설	◦ 신호기: 기 소요예산 천 원 ◦ 안전표지: 개 소요예산 천 원 ◦ 노면표시: km 소요예산 천 원
	도 로 부속물	◦ 도로표지: 개 소요예산 천 원 ◦ 도로반사경: 개 소요예산 천 원 ◦ 과속방지시설: 개소 소요예산 천 원 ◦ 미끄럼방지시설: 개소 소요예산 천 원 ◦ 방호울타리: 개소 소요예산 천 원
	노 상 주차장	◦ 폐지: 개소 소요예산 천 원 ◦ 이전: 개소 소요예산 천 원
소요예산 부담	총 계	_____ 천 원
	◦ 지방자치단체:	_____ 천 원
	◦ 국토관리청:	_____ 천 원
비 고		

노인 보호구역 지정·관리계획(년도)

[○○특별(광역시)시·특별자치도/○○시(군)]

지정 계획	총 ____개소	노인주거복지시설 ____개소, 노인의료복지시설 ____개소,
		노인여가복지시설 ____개소, <u>재가노인복지시설 ____개소,</u>
		<u>노인보호전문기관 ____개소, 노인일자리지원기관 ____개소,</u>
		<u>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____개소, 자연공원 ____개소, 도시공원 ____개소,</u>
		생활체육시설 ____개소, <u>조례로 정하는 시설 ____개소</u>
시설물 종류별 수량 및 예산	총 수량	총 _____ 천 원
	및 예산	◦ 교통안전시설: 종 소요예산 천 원 ◦ 도로 부속물: 종 소요예산 천 원
	교 통 안 전 시 설	총 _____ 천 원 ◦ 신호기: 기 소요예산 천 원 ◦ 안전표지: 개 소요예산 천 원 ◦ 노면표 시: km 소요예산 천 원
	도 로 부속물	총 _____ 천 원 ◦ 도로표지: 개 소요예산 천 원 ◦ 도로반사경: 개 소요예산 천 원 ◦ 과속방지시설: 개소 소요예산 천 원 ◦ 미끄럼방지시설: 개소 소요예산 천 원 ◦ 방호울타리: 개소 소요예산 천 원
	노 상 주차장	총 _____ 천 원 ◦ 폐지: 개소 소요예산 천 원 ◦ 이전: 개소 소요예산 천 원
소요예산 부담	총 계 _____ 천 원 ◦ 지방자치단체: _____ 천 원 ◦ 국토관리청: _____ 천 원	
비 고		

장애인 보호구역 지정·관리계획(년도)

[○○특별(광역시)시·특별자치도/○○시(군)]

지정 계획	총 ____개소	장애인 거주시설 ____개소, 장애인 <u>지역사회재활시설 ____개소,</u>
		<u>장애인 직업재활시설 ____개소,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____개소,</u>
		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____개소</u>
시설물 종류별 수량 및 예산	총 수량 및 예 산	총 _____ 천 원 ◦ 교통안전시설: 종 소요예산 천 원 ◦ 도로 부속물: 종 소요예산 천 원
	교 통 안 전 시 설	총 _____ 천 원 ◦ 신호기: 기 소요예산 천 원 ◦ 안전표지: 개 소요예산 천 원 ◦ 노면표시: km 소요예산 천 원
	도 로 부 속 물	총 _____ 천 원 ◦ 도로표지: 개 소요예산 천 원 ◦ 도로반사경: 개 소요예산 천 원 ◦ 과속방지시설: 개소 소요예산 천 원 ◦ 미끄럼방지시설: 개소 소요예산 천 원 ◦ 방호울타리: 개소 소요예산 천 원
	노 상 주차장	총 _____ 천 원 ◦ 폐지: 개소 소요예산 천 원 ◦ 이전: 개소 소요예산 천 원
	소요예산 부담	총 계 _____ 천 원 ◦ 지방자치단체: _____ 천 원 ◦ 국토관리청: _____ 천 원
비 고		

○○○ 보호구역 관리카드

[○○특별(광역)시·특별자치도/○○시(군)]

제 호 (앞쪽)

보호구역 지정			
<u>시설(장소)명</u>			
소재지	(전화번호:)		
지정일자	년 월 일	지정시설(<u>장소</u>)의 시설장(<u>관리자</u>) 성명	

보호구역 내 시설물 설치내용

일련 번호	구간별	연장 거리 (m)	도로 폭 (m)	시설물 설치내용
				○ 신호기(기): ○ 안전표지(개): ○ 횡단보도(개소): ○ 기타():

작성자 (계급) (성명) (인)

○○○ 보호구역 약도

※ 작성 방법

1.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의 시작하는 곳과 끝나는 곳의 위치를 표시한다.
2.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 내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과 도로부속물의 종류와 위치를 표시한다.

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 지정·관리 현황

[○○특별(광역시)시·특별자치도/○○시(군)]

1. 보호구역 지정·관리 현황

(앞쪽)

구 분		지정대상 (개소)	지정현황 (개소)	보호구역 총연장 (km)
어린이 보호구역	유치원			
	초등학교			
	특수학교			
	어린이집			
	학원			
	<u>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등</u>			
	<u>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</u>			
노인 보호구역	노인주거복지시설			
	노인의료복지시설			
	노인여가복지시설			
	<u>재가노인복지시설</u>			
	<u>노인보호전문기관</u>			
	<u>노인일자리지원기관</u>			
	<u>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</u>			
	자연공원			
	도시공원			
	생활체육시설			
	<u>조례로 정하는 시설</u>			
장애인 보호구역	장애인 거주시설			
	<u>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</u>			
	<u>장애인 직업재활시설</u>			
	<u>장애인 의료재활시설</u>			
	<u>대통령령·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</u>			

2.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·관리 현황

구 분	교통신호기 (기)	교통안전표지 (개)	노면표시 (개소)
어 린 이 보호구역			
노 인 보호구역			
장 애 인 보호구역			

3.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 설치·관리 현황

구 분	도로표지 (개)	과속방지턱 (개)	도로반사경 (개)	미끄럼방지시설 (개)	방호울타리 (개소)
어 린 이 보호구역					
노 인 보호구역					
장 애 인 보호구역					

4.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설치·관리 현황

구 분	합 계 (대)	속도·신호위반 검용 (대)	속도위반 (대)	주·정차 위반 (대)
어 린 이 보호구역				
노 인 보호구역				
장 애 인 보호구역		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“초등학교등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<u>시설</u> 을 말한다.	1. ----- ----- <u>시설 또는 장</u> <u>소를</u> -----.
가. ~ 마. (생 략) <u><신 설></u>	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 <u>바.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</u> <u>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</u> <u>시설 또는 장소</u>
2. “노인복지시설등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	2. ----- ----- -----.
가. 「 <u>노인복지법</u> 」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·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노인여가복지시설	가. 「 <u>노인복지법</u> 」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
나. ~ 마. (생 략)	나. ~ 마. (현행과 같음)
3. “장애인복지시설”이란 「 <u>장애인복지법</u> 」 제58조제1항제1호에	3. ----- 「 <u>장애</u> <u>인복지법</u> 」 제58조에 따른 장애

다른 장애인 거주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보호구역의 지정)

① ~ ⑤ (생략)

⑥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호구역으로 지정·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·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해당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(主)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. 다만, 시장등은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도로에 대해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⑦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, 노인

인복지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보호구역의 지정)

① ~ ⑤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

-----지정대

상시설 또는 장소의 주(主) 출입

문(출입문이 없는 장소의 경우에

는 해당 장소로 한다.)을 기준으

로 -----

-----.

⑦ -----

또는 장애인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거쳐 직접 보호구역 <u>지정 대상시설</u>의 주변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 제4조(보호구역 지정·관리계획) ① (생략) ② 제1항에 따른 연도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보호구역 <u>지정대상시설</u>의 수 2. ~ 5. (생략) 제11조(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) ① ~ ⑥ (생략) <u><신설></u>	----- ----- ----- -----<u>지정대상시설</u> <u>또는 장소</u> ----- -----. 제4조(보호구역 지정·관리계획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----- <u>지정대상시설과 장소의 수</u> 2. ~ 5. (현행과 같음) 제11조(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<u>⑦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 지정·관리 현황을 작성하거나 제6항에 따라 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 제4항 각 호</u>
---	---

<u>의 사항 또는 보호구역 지정시설</u> <u>휴·폐원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.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교통운영과	
연 락 처	02 - 3150 - 0612